

# 복수전공 운영규정

- 제정 : 1998. 03. 02
- 개정 : 2007. 10. 06
- 개정 : 2011. 10. 01
- 개정 : 2013. 10. 01
- 개정 : 2017. 05. 0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54조 및 동 시행세칙 제65조의 복수전공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졸업소요학점)** 복수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은 제1전공 및 제2전공 이수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

**제3조(이수학과)** 복수전공은 제1전공에 관계없이 본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**제4조(이수자격)** 복수전공 이수자격은 복수전공을 마칠 때까지 취득성적 평점평균이 2.50(C+)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이수방법)** ① 복수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1학기(3학기), 제3학년 1학기(5학기) 수강신청 기간중에 복수전공이수신청서(별첨서식1)를 학적과에 제출하고, 복수전공 과목을 이수한다.

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제4학년 2학기(8학기) 수강신청 기간중에 별첨서식(2)에 따라 복수전공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, 미제출시는 복수전공 포기자(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야 함)로 처리하여 제1전공 학위만 수여한다.

**제6조(이수변경)** ① 부전공과 복수전공이 같을 경우 부전공은 취소되고,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계산한다.

② 복수전공 이수자는 졸업 해당학기에 복수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,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.

**제7조(학위수여)** 복수전공자는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제1전공과 제2전공의 학사학위가 동시에 수여되며, 제2전공은 이수하였으나 제1전공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1전

공 학위는 보류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